



제43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어린이집 시설의 설치·관리 의무 신설 〉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02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어린이집 시설의 설치·관리 의무 신설	2
[참고자료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웅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24.

3. 회부연월일 : 2026. 4.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1.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어린이집 시설의 설치·관리 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기준에 맞게 어린이집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5조의6(공기질의 유지·관리 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 및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현재 어린이집은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¹⁾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²⁾에 따라

1) 「환경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 ⑩ (생략)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mu\text{g}/\text{m}^3$ 이하일 것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mu\text{g}/\text{m}^3$ 이하일 것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 25. (생략)

② · ③ (생략)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3. ~ 24. (생략)

② ~ ④ (생략)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 참고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은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까지 배포·안내하고 있음.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법 주요 내용]

구분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모든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적용 기준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적용 기준 세부내용	· 폼알데하이드 80$\mu\text{g}/\text{m}^3$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mu\text{g}/\text{m}^3$	· 폼알데하이드 80$\mu\text{g}/\text{m}^3$ · 미세먼지 75$\mu\text{g}/\text{m}^3$ · 초미세먼지 35$\mu\text{g}/\text{m}^3$ · 이산화탄소 1,000 PPM · 일산화탄소 10 PPM
위반 시 제재	· 기준 준수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자료 : 교육부

□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4년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을 받은 시설인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55,472개소) 중 2,520개소(4.5%)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35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였음. 그 중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11개소(3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을 별도로 살펴보면, 관리대상 어린이집 5,401개소 중 656개소(12.1%)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하였는데 그 중 11개소(1.7%)가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³⁾

[2024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

(단위 : 개소, %)

구분	총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대합실	철도역사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PC방	실내주차장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공중이용시설
관리대상 시설	5,472	694	72	27	19	6	31	360	233	56	213	828	1,230	338	587	110	1,711	719	331	541	233	403	308	272
오염도 검사시설	2,520	111	8	2	5	1	7	36	31	5	27	45	60	24	40	11	94	246	562	656	329	97	38	85
오염도 검사율	45	16.0	11.1	7.4	26.3	16.7	22.6	10.0	13.3	8.9	12.7	5.4	4.8	7.1	6.8	10.0	5.5	3.4	15.9	12.1	13.9	24.1	12.3	0.3
유지기준 초과시설	35	0	0	0	0	0	0	1	1	0	0	0	0	2	1	0	3	0	7	11	6	2	1	0
유지기준 초과율	1.4	0.0	0.0	0.0	0.0	0.0	0.0	2.8	3.2	0.0	0.0	0.0	0.0	8.3	2.5	0.0	3.2	0.0	1.2	1.7	1.8	2.1	2.6	0.0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 대상에 연면적 430㎡ 미만인 어린이집은 제외되어 있고,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 대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유지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등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환경보건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별도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환경보건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

3) 11개소 중 총부유세균 초과는 6개소, 초미세먼지 초과는 1개소, 폼알데하이드 초과는 1개소, 이산화탄소 초과는 3개소이었음.

경부가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는바, 「영유아보육법」에 별도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마련 및 이에 대한 준수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집행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관리·감독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19. 4. 2.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 대상 어린이집의 범위를 확대⁴⁾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집 위생을 강화 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현행 「환경보건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구체적 환경기준, 조사·점검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법률 간 중복, 이중규제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별도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현행 제도와 중복 가능성 및 현장 부담을 고려하면 신규 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보다 기존 법령의 실효성 제고, 재정지원 및 사각지대 보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7

4)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법인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에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법률 제16307호, 2019.4.2., 일부개정)

참고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PM-2.5) ($\mu\text{g}/\text{m}^3$)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mu\text{g}/\text{m}^3$)	총부유세균 (CFU/m)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		40 이하				
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라.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mu\text{g}/\text{m}^3$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화장실용 배기관
 - 조리용 배기관